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

□ 지원 배경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입원·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

□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 (사업주의 협조 의무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의3 (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)
- 「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증호흡기중후군(MERS)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」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-16(2020.9.14.)

□ 지원대상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코로나-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*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
* 지원 제외대상

1)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

- 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정부,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·유치원
- ③ 정부·지자체(공공기관 포함)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

2) '20.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 제외

※ '20.3.22.0시 이후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·접촉자는 지원가능(4.1. 이후는 지원 제외)

※ '20.3.27.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·접촉자는 지원가능(4.1. 이후는 지원 제외)

□ 지원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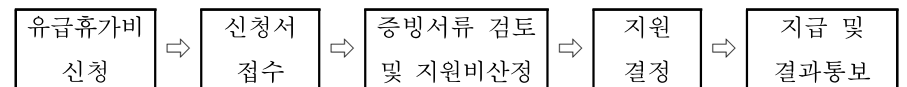
- (지원기준)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*으로 지급하되, 1일 상한액(13만원) 적용
 - 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÷ 26일
- (유급휴가 기간) 입원·격리기간*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**
 - 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(퇴원)된 날까지의 기간
 - **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
- (지원금액 산정) 1일 과세급여액(최대 13만원) × 유급휴가 기간

□ 신청방법

- (신청자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- (신청방법)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
- 신청시기
 - (격리자) 격리해제일 이후 ~ 별도 공지시까지
 - (입원자) 퇴원일 후 ~ 별도 공지시까지
- 신청서류

-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. (붙임 2)
-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- (입원자)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
 - (격리자)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
- ③ 격리기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재직증명서 등).
 -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
-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. (붙임 3)
-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'감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' 1부.
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)
-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(개인사업자는 사용자 통장, 법인은 법인 통장)

□ 신청 처리절차



□ 기타

-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'붙임 4' 참조